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8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0.

발 의 자 : 조은희 · 김용태 · 서천호
서명옥 · 김재섭 · 박상웅
신성범 · 이성권 · 조승환
이종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위해 외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어 보급,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·지도, 재외교육기관인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글·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,400여개에 달하는 해외 한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역량 강화, 교육환경 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.

또한,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, 외교부, 재외동포청 간 협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.

이에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,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·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, 제30조 및 제31조).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호 중 “교육활동 지원”을 “교육활동 및 한글학교 구성원의 자질·전문성 향상 지원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2항 중 “교육부장관에게”를 “교육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”로 한다.

제31조제2호 중 “운영과 사업에”를 “운영 및 사업, 교육환경 개선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교육원의 기능)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 행한다.	제29조(교육원의 기능)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한글학교의 <u>교육활동 지원</u>	2. ----- <u>교육활동 및 한글</u> <u>학교 구성원의 자질 · 전문성</u> <u>향상 지원</u>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30조(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)	제30조(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<u>교</u> <u>육부장관에게</u> 보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교</u> <u>육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</u> -----.
제31조(국고지원) 국가는 재외교 육기관 · 재외교육단체 및 학교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제31조(국고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 체의 <u>운영과 사업에</u> 필요한	2. ----- ----- <u>운영 및 사업, 교육환</u>

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	<u>경 개선에</u> ----- -----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